

윤리행동강령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주)아이센스(이하 ‘회사’ 라고 한다)와 구성원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려는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투명한 윤리경영에 부합하도록 법을 준수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② 본 구성원 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 이하 ‘행동강령’ 이라고 한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첨단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인류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려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의 행동강령은 회사, 국내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하 “구성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제3조 (행동강령 준수) ① 모든 구성원은 행동강령 이행에 동의하며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구성원은 항상 최신법규, 내부규정 및 사회적 요구를 이해하고 인식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 및 기타수단을 통해 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구성원은 공정한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항상 성실하게 행동하며 문제나 우려사항을 신속하게 보고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한다. 또한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4조 (지속적 관리 및 개선) ① 회사는 행동강령을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담당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② 회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한 인권 및 노동, 안전과 보건, 환경, 기업윤리, 법규준수 위험을 파악하는 프로세스를 개발, 유지해야 하며, 각 위험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파악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절차와 통제를 구현해야 한다.

③ 회사는 ESG 협의회 또는 이사회를 통해 사전 승인을 얻어 행동강령을 수정할 수 있으며, 최신 버전의 행동강령은 구성원을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다.

④ 회사는 행동강령과 관련한 국제표준, 성과목표, 시스템, 대상 및 이행계획을 작성하고, 행동강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내외부 감사, 평가, 점검, 조사 또는 검토를 통해 식별된 결함이나 위반사항을 적시에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반신고) ① 구성원은 법령, 윤리관련 규정 또는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위반 또는 우려사항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한다.

- ② 회사는 구성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고한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다.
- ③ 회사는 법령, 윤리관련 규정 또는 행동강령 위반 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2 장 인권과 노동

제6조 (평등 및 다양성) ① 회사는 각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과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 ② 회사는 모든 구성원의 권리가 존중되고,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며, 서로 협력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회사는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존중의 실천과 점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힘쓴다.

제7조 (차별금지 및 괴롭힘 방지) ① 회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나이, 결혼여부, 성적지향, 성정체성, 사회적 신분, 장애, 임신, 군복무 여부, 유전적 정보, 정치적 성향 또는 현지법에 의한 조건 등 업무 외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으며, 국제사회합의(IL0 100호, 111호 협약 등)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차별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 ③ 회사는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괴롭힘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8조 (아동노동 금지) ① 회사는 아동 노동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아동권리규제에 관한 사항을 지지하고 존중한다.

- ② 회사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과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사의 아동노동금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③ 회사는 업무유형(예: 야간근무)을 기준으로 하여 연소자(예: 만 18세 미만이거나 현지법으로 명시된 연령미만)에 대한 유해업무 배정을 금지한다.

제9조 (강제노동 금지) ① 구성원의 모든 근무와 작업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국제사회의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협약(IL0 제29호)을 준수한다
- ③ 회사는 구성원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래 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다.

제10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① 회사는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생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구성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법령 및 한 국제

사회의 협약(IL0 87호, 98호등)을 존중한다.

③ 회사는 구성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차별이나 괴롭힘, 위협 또는 보복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정치적 활동) ① 회사는 모든 정당과 공직후보자에 대해 중립을 지킨다.

② 회사의 이름이나 자산을 특정 정당이나 공직후보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사용하지 않는다.

③ 구성원은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위해 회사재산, 시설, 시간,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근무환경) ① 회사는 구성원들의 업무효율성 증대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구축에 노력한다.

② 회사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장애인 구성원들이 불편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③ 회사는 근무환경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개선조치 계획을 세우고 이행한다.

제13조 (고용조건) ① 회사는 구성원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구성원 채용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부담 책임이 있으며, 구성원에게 채용 과정에서나 채용한 이후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고용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집공고나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직무, 채용절차 등을 공개한다.

제14조 (근로시간 관리) ①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구성원의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근로시간 중 휴식을 보장한다.

③ 구성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⑤ 회사는 구성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한다.

제15조 (임금 및 복리후생) ① 회사는 국제기준 및 국가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공정하게 임금조건을 결정한다.

② 회사는 국내 법적 최소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임금과 복리후생을 구성원에게 제공한다. 또한, 임금 및 복리후생비를 정해놓은 시기에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공제항목을 적용하고 전액 지급한다.

③ 회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각 국가별로 명시된 최저임금 보장, 초과근로수당 지급, 사회보험 가입, 휴식·휴가 제공의무 등을 준수한다.

④ 채용 혹은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방법을 사용하여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 ⑤ 회사는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택근무, 육아휴직, 보육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접근 이용이 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회사는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복리후생 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노력한다.

제16조 (역량 강화) ① 회사는 모든 구성원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② 회사는 자사의 주요 정책 및 취업규칙, 안전보건 수칙을 구성원에게 주지시키며, 경영활동에 필요한 주요 법적 의무교육을 이행한다.
- ③ 회사는 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계획해야 하며 구성원은 교육에 성실히 임하도록 노력한다.
- ④ 회사는 신규채용자 및 부서이동자에 대해 신규입사자 교육, 직무교육 등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7조 (구성원 고충처리) ① 회사는 구성원의 업무와 관련한 고충처리제도 또는 내부고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 ② 회사는 고충처리제도 또는 내부고발 시스템을 통해 제보한 구성원의 익명성과 정보의 비밀유지를 보장한다. 또한 회사는 구성원이 고충처리 또는 내부고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③ 회사는 고충처리제도 또는 내부고발 시스템의 향상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3 장 건강 및 안전

제18조 (구성원의 건강증진) ① 회사는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구성원의 작업공정 이동, 작업 전환, 근로시간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 ③ 회사는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보고·유형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원인제거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체계 및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는데 주력한다.

제19조 (안전한 일터확보) ① 회사는 안전에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근무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수칙을 지킨다.

- ② 회사는 근로자가 잠재적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장을 설계하고, 안전규정 준수 및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③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 및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는데 주력한다.
- ④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⑤ 회사는 산업안전협의체를 운영하며 성과를 점검 및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및 공개한다.

제20조 (비상사태 준비 및 대응) ① 회사는 비상상황으로부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에 힘쓴다.

- ② 회사는 자연재해, 전염병, 화학물질 유출,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 ③ 회사는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에 대한 사내규정에 따라 화재, 악천후, 화학물질 누출, 해킹, 전산망 오류 등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 훈련 및 평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21조 (시설, 위생 및 생활조건) ① 회사는 목욕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구성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다.

- ② 회사는 휴게공간, 화장실, 건강관리실, 식당 등 다수가 사용하는 위생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하는 등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회사는 위생시설 사용 및 유지를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위생 현황을 주기적으로 신고한다.

제 4 장 구성원의 윤리

제22조 (윤리경영) ① 구성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핵심가치, 사업목표 등을 공감하고,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회사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수행을 지향한다.

- ② 구성원은 법률, 회사의 규정 및 자기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개인의 품위훼손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도박, 성범죄, 폭력, 사기 등)를 하거나 교사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부패방지) ① 구성원은 정직을 기반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각 국가별 부패방지법규를 준수한다.

- ② 구성원은 업무상의 부정부패행위를 금지하며, 고객, 공급업체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와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4조 (이해상충 방지) ① 구성원은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경우 이해관계 상충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먼저 상급자 또는 윤리담당 부서의 자문을 구한다.

② 구성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성실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협력사, 대리점, 판매점의 주식, 채권 등의 부당한 개인적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③ 구성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성실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업 또는 부업 등은 할 수 없다.

④ 구성원은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강연 및 인터뷰를 할 때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공개발표 및 소셜미디어(SNS) 활용) ① 구성원은 강연 및 인터뷰 등 회사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성원은 공개 발표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때는 구성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히고, 회사 또는 구성원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구성원은 소셜미디어 사이트와 블로그를 사용할 경우 회사의 비밀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제26조 (자산 및 시설이용) ① 구성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 및 시설을 직무를 위해 이용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유무형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을 개인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단, 자산 및 시설의 개인적 사용이 불법적이지 않고, 이해상충을 유발시키지 않고,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5 장 공정한 경쟁

제27조 (공정한 경쟁) ① 구성원은 구매 또는 영업 협상 및 계약 과정에서 각 국가별 공정한 경쟁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법령을 준수하며, 회사의 거래업체도 동일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구성원은 적절한 승인 없이는 계약이나 업무와 관련된 약속을 해서는 안되며, 사업파트너 및 협력사와의 모든 업무 관계는 표준 계약 절차를 기반으로 합법적인 서면 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개인의 이익이나 제3자의 부적절한 혜택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

제28조 (무역규제 준수) ① 회사는 국제 거래 시 국제기구(UN, WTO, OECD 등), 지역협약체(ASEAN, APEC, EU 등) 그리고 각 국가별 관련협약(FTA 등) 및 법규를 존중한다.

② 회사는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기술을 수출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 법규에 따른 수출 허가 절차를 준수하며 필요한 원산지증명, 인증, 그리고 시험성적서를 구비한다.

제29조 (위조 방지) ① 회사는 위조방지 정책과 브랜드 보호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든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위조 행위를 제한 또는 감소시키고 상표권 및 브랜드를 보호한다.

② 회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회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재고관리, 조달절차 및 검사 프로토콜을 통하여 확인한다.

제 6 장 정보보호

제30조 (구성원의 정보보호) ① 구성원은 회사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과 사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회사의 비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근무기간 중 알게 된 회사의 비밀정보에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성원은 불법행위를 통해 제3자의 영업비밀이나 기타 비밀정보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경쟁업체의 중요한 정보를 불법행위를 통해 수집하거나 이에 동조 또는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1조 (개인정보보호) 회사 및 구성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고, 현직 및 퇴직 등 모든 구성원과 직무 중 알게 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32조 (정보관리체계) ① 회사는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적절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요 정보의 유출, 정보도용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한다.

② 구성원은 인터넷 사용시 바이러스 유입 또는 IT 보안 위반 등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 구성원은 퇴직시에 회사의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나 매체를 포함한 자산은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비밀정보의 공개 및 사용은 금지된다.

제33조 (미공개 정보이용) ① 구성원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적인 금전거래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구성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고객, 주주 및 투자자 보호

제34조 (고객 존중과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성장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내 및 각 국가별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③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으며,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구성원은 환경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하고, 고객 및 협력사의 요구와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제품설계, 유통, 서비스 등의 개선 과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35조 (주주 및 투자자 보호) ①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수용한다.

- ②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③ 회사는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장 공급망 관리

제36조 (협력사 관리) ① 회사는 협력사가 [별지] ‘외부공급자 사회적 책임 행동강령’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협력사가 [별지] ‘외부공급자 사회적 책임 행동강령’에 따라 인권, 아동노동금지,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환경에 대한 국제표준과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③ 회사는 기술, 품질, 기한 내 납품 등 기본적인 역량과 함께 협력사 ESG경영 전반을 평가에 반영한다.
- ④ 회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협력사에게 윤리, 환경, 노동, 인권, 안전, 보건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⑤ 구성원은 특정 협력사에게 특혜를 주는 권리남용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37조 (상생경영) ① 회사는 국내외 상생협력 관련 법안 및 규정을 준수하여 협력사와 공동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추구한다.

- ② 회사는 건전한 기업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동반성장 활동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공급사와 거래하는 업체까지 동반성장을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③ 회사는 협력사와 혁신 혹은 파트너십 프로젝트 기반으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한다.

제38조 (책임있는 조달) ① 회사는 광물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환경오염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

- ② 회사는 ‘OECD Due Diligence Guidance’를 기반으로, 분쟁광물 사용에 있어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한다.
- ③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통해 윤리적으로 채굴된 광물이 제품에 포함되어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분쟁광물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한다.
- ④ 회사는 필요시 당사에 납품되는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망 내 위험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협력사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장 지역사회와 환경

제39조 (글로벌 기업시민 역할 강화) ① 구성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회사는 소재 국가의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수행한다.

③ 회사는 진출국 지역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존중한다.

④ 회사는 사업 활동을 통해 진출국의 현지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구성원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⑤ 회사는 구성원의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⑥ 회사는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회, 교육, 문화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40조 (사회공헌사업의 투명한 관리) ① 회사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CSR) 및 기타 비상업적 노력에 관련된 모든 금전 및 현물 기증품을 청렴하게 관리한다.

② 회사는 자사제품의 구매, 사용 또는 추천을 유인하거나 이에 대한 보상으로 또는 부적절한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하거나 금전 또는 현물 기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제3자(예: 보건기관, 의료단체, 환자협회 및 비영리기관)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지원에 대한 모든 요청을 회사의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

④ 회사는 독립성이 필요하거나 혹은 요구되는 경우, 회사의 지원을 받는 수혜자나 그들의 활동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회사 정책과 절차에 따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제41조 (환경보호) ① 회사는 환경 관련 국내외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회사는 공공의 건강과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42조 (환경경영) ① 회사는 환경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경영전략과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회사는 환경친화적 자원 사용의 확대 및 자원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③ 회사는 환경경영 활동에 대한 환경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한다.

제43조 (녹색경영) ① 회사는 제품에 유해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정책에 따라 적절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 ② 회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고 감축하여 기후 및 생태계 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회사는 에너지 효율성, 수자원 보호, 원자재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도모한다.